

1994년도 이과대 모임 결산보고

년 월 일	수 입	지 출	잔 액 (원)
1994. 3. 17	총무 인수 인계 이월금: 316,300원		316,300
3. 18	신임교수 환영회 생물학과 (이충은, 김성훈교수) 수학과 (김미경교수) 학과 찬조금: 생물학과 100,000원 수학과 50,000원		466,300
5. 20	자연과학캠퍼스 교수 체육대회 상금: 200,000원		666,300
5. 27	이과대 모임 회비: 1,720,000원		2,386,300
6. 3		이과대 교수회의 저녁 식사 및 다과비: 103,740원	2,282,560
6. 9		박문호교수 정년기념 금메달(순금 1냥) 500,000원	1,782,560
6. 13		박문호교수 정년기념 및 이과대 1학기 종강연 대려도: 785,000원 노래방: 210,000원 (봉사료 포함)	787,560
	박문호 교수 회사금: 300,000원		1,087,560
6. 15	교수 지도비: 680,000원		1,767,560
11. 24		이과대 교수회의 다과비: 30,000원	1,737,560
12. 6		김영돈, 안운선교수 정년기념 행운의 열쇠(2개) 960,000원	777,560

94학년도 제2회 이과대 교수회의 회의록

일시 : 1994 년 6 월 3 일 (금요일) 오후 4:10 - 7:45

장소 : 31355 실

참석자: 생물학과 이상태, 이우성, 이석희
수학과 이우영, 채영도, 이상구, 김미경
물리학과 김병택, 박종윤, 윤석왕, 최무용, 최영일, 최한용, 홍승우, 권용성
화학과 이순보, 강석구, 유찬모, 이순원, 김성규

이상 20 명

보 고 사 항

1. 기초과학연구소장이 1) 94년도 교외연구비 선정과제 현황, 2) 기금현황, 3) 93년도 간접연구경비 징수현황을 보고하다.
2. 학장이 이과대 교수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내규 제정에 대한 경과를 “이과대 제 94 -13 호 (94. 5. 20) 별첨1”과 같이 보고하다.

심 의 및 의 결 사 항

1. 이과대 교수 연구 업적 평가에 관한 내규안을 심의하여 별첨과 같이 확정하고 이 내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다.

기 타 사 항

1. 여러 교수들이 기초과학연구소 기금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이과대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하다.
2. 학장이 교수 의견 수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공대에서는 교수평의회가 발의되었음을 보고하다. 여러 교수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구체적인 이과대 의사표시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다.

-끝-

이과대 교수 연구 업적 평가에 관한 내규

-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내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생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및 화학과 (이하 “생수물화”로 칭함) 소속 교수의 연구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평가대상) 이 내규는 생수물화 소속 교수에게 적용하며, 평가는 생수물화 분야별로 실시한다.
- 제 3 조 (평가자료) 연구처에 제출한 전임 교원 학술연구 실적자료중 다음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전임교원 학술 연구 실적 코드 번호 23, 24, 27, 28).
 2. 전문학술분야의 단행본 (코드번호 11, 12, 13).
 3. 전문학술대회의 발표논문 (코드번호 25, 26).
- 제 4 조 (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학장과 생수물화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맡는다. ②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고, 제 6 조에 의거하여 개인별 환산평가점수 및 분야별 평균 환산평가점수 산출과 우수연구자를 선정한다.
- 제 5 조 (평가 기간 및 일정) 전년 12월 31일 기준, 과거 5년간 연구업적자료를 매년 평가하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4월 30일 : 연구처에 전년도 교수개인별 연구업적 자료 제출 완료.
 2. 5월 15일 : 연구처에 전년도 평가자료 의뢰.
 3. 5월 31일 : 5년간 교수개인별 평가자료 확인 완료.
 4. 6월 1일 : 평가위원회 구성.
 5. 6월 30일 : 평가결과 발표 및 평가위원회 해체.
- 제 6 조 (평가방법) 제 3 조에 정한 평가자료에 업적별로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산평가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개인별 환산평가점수를 정한다.
1. 제 3 조에 정한 모든 평가자료에 평가저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수를 적용한다. 단, 평가저자수는 각 업적물의 총 저자수에서 본 대학 생수물화 대학원생을 제외한 수를 의미한다.
 - ① 1인 : 10점.
 - ② 2인 : 7점.
 - ③ 3인 : 5점.
 - ④ 4인 이상 : 3점.

2. 연구논문이 게재된 전문학술 논문집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 ① Science Citation Index(SCI)에 가입된 논문집에 실린 논문 : 2.0.
 - ② 국내 전문 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집에 실린 논문 : 1.0.
 - ③ 대학및 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집에 실린 논문 : 0.3.
3. 전문학술분야의 단행본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 ① 저서 : 2.0.
 - ② 역서 : 1.0.
 - ③ 편저 : 0.5.
4. 전문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술 대회 논문집에 논문전체가 실린 논문은 학술대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 ① 국내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 0.4.
 - ② 국내에서 개최한 국내학술대회 : 0.2.

제 7 조 (우수 연구자 선정) 다음의 모든 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수연구자로 선정한다.

1. 본교 재직년수가 5년이상인 자.
2. 과거 5년간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적이 없는 자.
3. 각 분야에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를 얻은자.

	생물*	수학	물리	화학
① 과거 5년간 SCI 가입 논문집에 실린 편수	편이상	2편이상	5편이상	5편이상
② 당해년 환산 평가 점수	점이상	70점이상	100점이상	100점이상

제 8 조 (결과발표) 각 교수의 환산평가점수와 분야별 평균환산평가점수를 개인별로 통보하고, 우수연구자를 이과대 각 교수에게 공개한다.

제 9 조 (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생수물화 재직교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부 칙

이 내규는 1990년에서 1994년까지의 평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1995년부터 실시하며, 1995년도에 이 내규를 개정할 때는 생수물화 재직교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94학년도 1학기말까지 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할 것임.